( 별첨#4 )

**비밀유지 확약서**

한국공항(주) 귀중

에 주소를 둔 ( 이하 "회사" )는 한국공항(주)의 세탁공장 부동산 및 장비 일체의 매각 ( 이하 "본 거래" )과 관련하여 한국공항(주) ( 이하 “매도자” ) 에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회사”는 본 거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도자”의 재무, 영업 등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매도자”가 “회사”,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인 ( “회사”가 본 거래를 위하여 선임 또는 운영하는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문사 및 자회사 등 모든 관계인 및 그 임직원으로 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합니다.

1) “매도자”로부터 제공되는 Information Package ( Information Memorandum등 )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2) 기타 본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자”가 현장설명회, 구두대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제공하거나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매도자”의 기술, 영업, 유·무형 자산, 관리 및 재무 등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 및 본 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된 모든 내용

2.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공공영역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매도자”에 의한 공개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 단,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비밀정보를 “회사”가 본 거래를 평가할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 비밀정보는 “회사” ( “회사”의 임직원 포함 ) 와 관계인에 의해 비밀유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1) 모든 비밀정보는 본 거래를 위한 평가 및 의사결정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는 “회사” 임직원 및 관계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2)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1)호 이외의 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비밀정보를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도 본 확약서의 구속을 받는다는 서면동의서를 징구 할 것을 약속합니다.

5. “회사”나 관련 법령 또는 사법부, 정부와 감독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매도자”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것을 약속합니다.

6. “회사”가 본 확약서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거래를 위한 검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매도자, 임직원,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다.

7. “회사”가 본 확약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불이행의 예상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매도자”에게 알리고 의무 이행을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8. “회사”는 “매도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매도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9. “회사”가 본 확약서에서 정하는 본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와 복사본 등 전부를 “매도자”에게 즉시 반환할 것입니다. 만약 제공된 비밀정보를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관계인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파기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매도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10. 본 확약서는 “매도자”의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변경·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매도자”에 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11.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결하며,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 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는 상기의 사항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  |
| --- | --- |
| 법 인 명 : |  |
| 주 소 : |  |
| 대표이사 : | (인) |